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박재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양현국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8. 3.경 인스타그램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피고인이 누구인지 숨긴 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욕, 성관계 관련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답변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5. 8. 14. 21:16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별지 대화내역 및 전자정보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번), 통합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3. 12.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¹⁾을 선고받고 2023.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4. 10.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에서 본 징역 3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위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명수 _____

1) 현재 이 부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